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과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첫째, 중앙치유농업센터가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운영, 치유농업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관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등으로 구체화하여 사업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조직에 전문 자격체계인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셋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활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법」에 준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행정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번호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
정비(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정한 중앙치유농업센터 업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함(신설안 제5조의2제1항)

* (1호) 법 제7조의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호)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3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호)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
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 (5호)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신설안 제5조의2 제2항~제6항)

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26.1.1.)에 따른 '통합특별시' 신설과 관련
하여 권한 위임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11조 제1항)

다.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사항 정비(안 제11조제2항)

○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
술진흥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함(개정안 제11조제2항)

라. 치유농업법 제11조제4항 신설(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 제12조)

- 법 제11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당초 제11조 ‘제4항~제7항’이 ‘제5항~제8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법률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2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의 전담조직에 법 제2조제4호의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규모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중앙치유농업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법」 제34조제4항과 제5항을 따르며, 지도·감독 사항은 「농촌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성과평가, 시정·보완 요구, 예산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1조제7항”을 각각 “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법 제7조의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u> <u>2.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u> <u>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u> <u>4.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u> <u>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법 제8조의2제2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u>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의 전담조직에 법 제2조제4호의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규모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중앙치유농업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법」 제34조제4항과 제5항을 따르며, 지도·감독 사항은 「농촌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성과평가, 시정·보완 요구, 예산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
----- 법 제11조제8항-----

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

② ----- 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② -----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
-----.

<삭 제>

2. <u>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u>	<u><삭 제></u>
3. <u>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u>	<u><삭 제></u>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1조제3항 및 <u>제6항</u>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생 략)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7항</u>----- ----- -----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연 락 처	(063) 238 - 1022